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5. 11 선고 2019가단209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1나70103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5. 11 선고 2019가단20916 판결

전 문

원 고 A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원

피 고 C

피고보조참가인 D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구

변 론 종 결 2021. 4. 13.

판 결 선 고 2021. 5.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5. 3. 3. 접수 제169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 E, B을 두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에 대한 채권자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가압류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3. 9. 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다. 원고는 2014. 12. 3. 심정지 발생으로 F병원에 응급실에 입원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았는데, 당시 시행한 뇌영상검사상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았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3. 피고 앞으로 2015. 3. 3.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참가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카단16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2. 11. 가압류결정을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바. 참가인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6512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피고는 G와 함께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피고인 C은 피고, 피해자 D는 참가인,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부동산을 가리킨다)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정1251)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2015. 10.경 피해자 D로부터 사토장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의 차용계약을 체결한 뒤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2016. 2. 11.경 피고인 C 소유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H아파트 I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가 설정되고, 2016. 11. 23.경 피해자와의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 C이 피고인 G에 대한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피고인 G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4.경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06번길 2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들 사이에 J대학교 사토장 사업 투자약정 및 투자금 미이행에 기한 채권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채권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자 피고인 G, 채권최고액 2억 5천만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12864호로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하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참가인이 위 소송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소송위임의 적법 여부를 다투었다. 위 법원은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 각하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위 각하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종전 소송’이라 한다).

자. 종전 소송 확정 후 원고의 아들 B은 원고를 사건본인으로 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하여 인용 심판을 받은 다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2. 3. 심정지로 병원에 입원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으로 사지마비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증여 당시 정상적인 의사판단을 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 피고는 임의로 이 사건 증여 관련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나. 참가인의 주장

원고가 사채업을 해오던 중 2014. 12. 3. 심정지로 쓰러지자, 원고, 피고와 자녀 E, B은 이 사건 부동산 등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사채업을 계속하게 하였다. 피고는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 등을 받아 사업에 활용하였고, 참가인으로부터도 돈을 빌렸다. 그 후 피고는 거래처로부터 채권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손실을 보게 되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자작극적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에게 대출을 해준 채권자들의 채권회수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반사회적, 범죄적 소송이다. 또한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아들 B이 원고의 성년후견인이 되어 가족공동체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어머니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관련 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하면서 제기한 패륜적인 소송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이 사건 부동산 관련 피고의 강제집행면탈 행위, 종전 소송의 경과, 종전 소송과 이 사건에서의 피고의 태도(피고는 이 사건에서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성년후견인 B과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 제기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B과 피고 사이에 종전 소송이나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4. 12. 3. 심정지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당시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이 법원에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진료기록감정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채택하였으나, 진료기록감정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진행된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이 채택을 취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과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기진석

별지

<1동건물의 표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 및 평슬래브지붕 19층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 15242.9㎡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 27538.7㎡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 33933.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6층 호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131.40㎡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76715.2분의 68.633

-끝-

